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827
----------	------

제출년월일 : 2025년 5월 26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세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 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납세자의 권익증진과 지방세 불복 민원에 대한 선정 대리인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납세자보호관 업무에 선정 대리인 업무 추가

나.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에 규정된 선정 대리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에 이관 신설
- 선정 대리인 위촉 요건, 위촉동의서 및 서약서, 선정 대리인 신청 및 신청결과 통지 등 규정 신설

다. 그 밖의 문구 정비 등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평가제외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제외법령
- (5) 평가담당관(공공갈등진단): 갈등사항 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
의견: 해당없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5. 4. 3. ~ 4. 23.) 결과: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작성자 :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공도연(☎2133-6688)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1호 중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6조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시”를 “서울특별시”로 한다.

제6장의 제목 “납세자 권리현장 등”을 “선정 대리인”으로 한다.

제23조부터 제26조까지를 각각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로 하고, 제23조

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24조(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① 시장은 영 제62조의2제7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하여야 한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②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 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4항에 해당하여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⑦ 선정 대리인은 불복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⑧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⑨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대리인이 없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불복청구(이의신청)일자, 납세자, 선정 대리인, 결정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이 선정 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62조의2제6항에 따른다.

제26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장 납세자 권리현장 등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 제8조부터 제10조까지에 따라 행한 선정 대리인의 위촉 등 그 밖의 행위는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2에서 위임한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과 납세자의 권리보호에 <u>관하여 필요한</u>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 <u>필요한</u> ----- ----- --.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납세자보호관으로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제5조(납세자보호관의 자격) ① ----- ----- ----- --.
1. <u>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u> 소속 공무원으로서 지방세 관련 업무경력이 7년 이상 근무한 4급 또는 5급 공무원	1. <u>서울특별시</u> ----- ----- ----- -----
2. (생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납세자보호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납세자보호관의 업무)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u><신설></u>	5. <u>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 대리인"이라 한다)의</u>

현행	개정안
5.·6. (생략)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납세자보호관은 제6조의 업무와 관련하여 <u>신</u> 및 자치구의 세무부서의 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 1. ~ 6. (생략) 제6장 <u>납세자 권리헌장 등</u> <u><신 설></u> <u><신 설></u>	<u>운영에 관한 사항</u> 6.·7. (현행 제5호 및 제6호와 같음) 제7조(납세자보호관의 권한) --- ----- ---- <u>서울특별시</u> ----- ----- -----. 1. ~ 6. (현행과 같음) 제6장 <u>선정 대리인</u> 제23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u>제62조의2제2항제2호</u> 각 목의 <u>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u> 제24조(선정 대리인의 위촉·해촉 등) ① 시장은 영 <u>제62조의2제7항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 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로서 관련 경력 3년 이상인 사람을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촉을</u>

현행	개정안
	<u>배제하여야 한다.</u>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선정 대리인으로 위촉된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위촉 동의서’ 및 ‘서약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선정 대리인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거나 직무수행의 불성실 또는 그 밖에 해촉할 만

현행	개정안
	<u>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임기 중이라도 선정 대리인을 해촉하여야 한다.</u> <u>⑤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제4항에 해당하여 해촉되는 경우에는 다른 선정 대리인을 지정하여 불복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u> <u>⑥ 선정 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 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u> <u>⑦ 선정 대리인은 불복 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u> <u>⑧ 시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제4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⑨ 시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u>

현행	개정안
<u><신 설></u>	<u>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u> <u>제25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대리인이 없는 과세전적 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시장에게 규칙에서 정하는 ‘서울특별시 선정 대리인 지정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u> <u>② 시장은 법 제93조의2제2항에 따른 선정 대리인 신청 결과를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u> <u>③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이의신청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u> <u>④ 시장은 선정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 불복청구(이의신청)일</u>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3조 ~ 제26조 (생 략)	자, 납세자, 선정 대리인, 결정 내용 등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 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 다. ⑤ 구청장이 선정 대리인을 선 정하는 경우에는 영 제62조의2 제6항에 따른다. 제7장 납세자 권리현장 등 제26조 ~ 제29조 (현행 제23조부 터 제26조까지와 같음)

서울특별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미첨부 사유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정 대리인 업무가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편입됨에 따라 기존 세제과에서 운영하던 선정 대리인 업무를 납세자보호관 업무로 이관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으로 제출의 순증가 발생 사항 없음

4. 작성자

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공도연 주무관(2133-6688)